

의학과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연구장학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6.)

제2조(운영위원회) 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학과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위청구논문 관련 사항
2. 장학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과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사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육과정 운영) ① 석사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강좌개설은 학기당 기초공통과목 1강좌(3학점)와 각 전공과목 3강좌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 공통과목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까지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비동일계 출신자는 학과에서 정한 선수과목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선수과목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성적이 B학점 미만일 때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강좌개설은 학기당 기초공통과목 1강좌(3학점)와 각 전공과목 3강좌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공통과목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까지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비동일계 출신자는 학과에서 정한 선수과목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선수과목은 학기 당 6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성적이 B학점 미만일 때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장학제도) 학생들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지원인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본 학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장학제도를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지침은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